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01
----------	-----

2022년 12월 2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0월 11일, 김인제 의원(찬성자 21명)
-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제9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인제 의원)

### 가. 제안이유

최근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힌남노가 전국에 걸쳐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힌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침수 방지시설의 유무는 피해의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음.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한남도와 같은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위협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침수 방지시설은 그러한 대응기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써 그동안 그 설치와 지원은 기초지자체의 정책적 차원에서 이뤄진 바 있으나, 이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하고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세계 제일의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고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2) 시장으로 하여금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4) 시가 자치구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5) 시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6) 시로 하여금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 및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 개요

- 본 제정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이하 “시”)가 자치구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표 1] 제정안 주요골자

목 차	주 요 내 용
제1조(목적)	·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풍수해의 정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하고 침수 방지시설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시설 및 그 밖에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함.
제3조(책무)	· 시장으로 하여금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함.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제6조(실태조사)	· 시장이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침수 위험지역 등에 대한 현황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7조(비용 지원)	· 서울시가 자치구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8조(홍보 등)	·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 및 홍보할 수 있도록 함.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서울시 관내 침수피해 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 관내 풍수해에 따른 침수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8년 1,471건, '19년 3건, '20년 150건, '21년 0건, '22년(9월 30일 기준) 20,108건이며,
- 이들에 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은 '18년 사망자 4명(재산피해 26억 23백만원), '19년 사망자 1명(재산피해 1억 8백만원), '20년 사망자 1명(재산피해 2억 76백만원), '21년 (침수피해 無), '22년 사망자 8명(재산피해 683억 5천만원)으로 올해 건수 및 피해 규모가 급증하였음.

[표] 최근 5년간 서울시 관내 침수 피해 현황

('22. 9. 30. 기준)

연 도	사망자(명)	피해건수	피해액(백만원)	복구액(백만원)	비 고
합계	14	21,732	71,357	97,883	
2022	8	20,108	68,350	94,692	
2021	0	0	0	0	침수 피해 없음
2020	1	150	276	347	
2019	1	3	108	75	
2018	4	1,471	2,623	2,769	

※ 인명 및 사유재산 관련 피해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피해 기준이며, 복구는 재난지원금 지급(관외 피해 포함) 기준. (행정안전부\_ '2020재해연보' 및 '22년도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발췌)

## ■ 침수 방지시설 설치 관련 제도 및 지원 현황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1)는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용도로 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내수재해위험지구<sup>2)</sup> 등에 위치한 시설에 긴급 안전조치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시는 이에 근거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07년부터 자치구와 함께(시비50:구비50) 저지대 지하주택 등의 침수취약주택에 물막이판(차수판), 옥내역지변(역류방지 밸브), 수중펌프(양수기), 집수정(물저장고)과 같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최근 5년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22. 9. 30. 기준)

연도	가구수	사업비 (백만원)	시설 구분			
			물막이판(개)	옥내역지변(개)	수중펌프(대)	집수정(개소)
합계	35,795	48,550	56,235	98,487	1,901	92
2022	8,545	11,067	12,451	32,822	613	-
2021	7,052	10,280	12,150	18,408	34	3
2020	6,849	9,898	12,315	17,202	51	28
2019	6,868	8,960	10,345	15,972	109	47
2018	6,481	8,345	8,974	14,083	1,094	14

※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는 자치구 예산 포함

-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2.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의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9호(2022.11.30.)
  - 내수재해위험지구 : 하천 등의 외수위 상승, 내수지역 홍수량 증가 등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의 발생이 예측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

[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내역

시설	사진 및 설치도	기능 및 역할	신청방법
물막이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노면수 유입을 막을 때 사용</li> <li>지하주택,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 침수 방지 위해 사용</li> <li>탈부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설치 신청</li> <li>② 설치 관계자가 방문하여 현장 확인</li> <li>③ 설치 필요성과 시설, 수량, 일정 결정</li> <li>④ 설치 지원</li> </ul>
옥내역치변	 <p>① 거름망 들어내기, ② 제품을 왼쪽으로 1cm정도 돌리기, ③ 제품을 위로 빼내기, ④ 패킹부위의 이물질 제거하기, ⑤ 분리방법의 반대 순으로 조립하기, ⑥ 패킹이 제품과 밀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류방지기능: 물은 흐르게 하면서 바닥에서 역류를 방지하는 기능</li> <li>하수 악취 방지</li> <li>구형 배수구(바닥, 싱크대)를 교체</li> <li>각종 벌레 유입 차단</li> </ul>	
수중펌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 및 상가로 들어온 빗물을 밖으로 배출</li> <li>집중호우 및 태풍 예보 시 동주민센터 구청에서 대어 가능</li> <li>펌프 몸체가 물속에 잠긴 상태로 사용</li> </ul>	
집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우에 따른 빗물 저장 역할</li> <li>집수정 내 만관 시 빗물, 하수 강제 토출</li> <li>집수정내 수중펌프 무상설치사업이나 유지관리 의무는 건물 소유주 책임</li> </ul>	

○ 한편, 상위법의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3)(책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즉, 시장은 자연재해 예방

3)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생략)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2017. 10. 24.>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8. (생략)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을 위하여 풍수해 예방 및 대비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는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는 ‘22. 9. 14일 보도자료<sup>5)</sup>를 통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지자체로 하여금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이 침수 방지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타 지방자치단체 중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시·도) 1개(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0개(서울특별시 서초구 외 19개)로 총 21개 자치단체(‘22.12.15.기준)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4)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거. (생략)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5) ‘행안부, 지하공간 침수 예방 수방기준 전면 개선한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2022. 9. 14. 보도자료)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중략)~ 지자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법」 제4조<sup>6)</sup>(국가 등의 책무) 및 제31조의2<sup>7)</sup>(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sup>8)</sup>(책무) 등에 근거하고 있음.

[표] 타 지방자치단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관련 조례 현황

(2022.12.15. 기준)

연번	구분	자치단체	제정일	주요내용
1	광역 자치 단체	부산광역시	2016.1.1.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 침수피해 발생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 침수방지시설 설치 예산에 대한 자치구로의 지원 근거
2	기 초 자 치 단 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11.3.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 침수피해 발생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금액 및 지원 범위
3		경기도 의정부시	2018.12.19.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4		광주광역시 남구	2019.4.1.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 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 침수피해 발생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5		광주광역시 북구	2020.12.30.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 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 침수피해 발생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6		전라북도 군산시	2022.11.9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 침수피해 발생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기준
7		부산광역시 금정구	2021.8.11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 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 설치비용 지원기준
8		부산광역시 남구	2022.4.8.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 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 침수피해 발생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9		부산광역시 동구	2021.3.31.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 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 침수피해 발생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10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4.11.27.	· 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 침수피해 발생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 설치비용 지원기준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8)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번	구분	자치단체	제정일	주요내용
11		부산광역시 북구	2022.12.14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 침수피해 발생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 지원대상 및 적용 기준 · 신청방법 및 지원금 교부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0.12.18.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 침수피해 발생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 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13		부산광역시 서구	2021.11.15.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 설치비용 지원기준 · 침수피해 발생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2021.12.29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 침수피해 발생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 설치비용 지원기준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2020.12.24.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 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 침수피해 발생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22.4.20.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 침수피해 발생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 지원 대상 및 비용 지원 기준 ·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금 교부
17		강원도 삼척시	2022.11.18.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 설치비용 지원기준
18		경상남도 창원시	2019.8.14.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 · 설치비용 지원기준
19		충청남도 천안시	2021.4.15.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 침수피해 발생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 지원대상
20		충청북도 충주시	2018.2.23.	· 지원대상
21		경상북도 포항시	2022.11.9.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 ·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 설치비용 지원기준 · 침수피해 발생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른 세부적 차이는 있으나 침수 피해가 있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 조례안 주요조문별 의견

### 1)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풍수해”, “침수 방지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먼저, “풍수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9)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하며,
- “침수 방지시설”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sup>10)</sup>에서 명시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인 차수판과 역류방지 밸브를 인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9)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1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 이는 시와 자치구가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해 '0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차수관(물막이판), 역류방지 밸브(옥내역지변) 외에도 수중펌프(양수기)와 집수정(물저장고) 등의 시설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2) 책무 (안 제3조)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즉, 시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풍수해 예방 및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와 맥을 같이한다 할 것임.

### 3)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은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기준 및 대상 그리고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해 수립 해야할 계획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설치 및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 여겨짐.
- 다만, 제3항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의회(이하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가 시의 계획수립에 따른 사업 성과를 확인토록 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 동 사업의 특성상 각 자치구가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실적 및 성과를 집계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2월 까지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바,
- 안 제5조제3항의 보고 시기를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한 의회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변경하는 것이 통계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사료됨.

[표] 안 제5조 수정안(1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u>서울특별시의 회</u>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u>서울특별시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u> <u>에서</u> -----.

#### 4) 실태조사 (안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안 제6조제1항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6조제2항은 이를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제5조의 지원계획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음.

## 5) 비용 지원 (안 제7조)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안 제7조제1항은 시가 자치구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구청장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재난관리기금의 투입 이외에도 본 조례안에 의해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의 예산 지원도 가능한 지원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고, 저지대 침수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확대를 적극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6) 홍보 등 (안 제8조)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보 또는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안 제8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권장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침수위험지역

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어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7) 협력체계 구축·운영 (안 제9조)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안 제9조는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내실 있고 현실성 있는 지원을 위해 필히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라 여겨지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한 기존의 배수시설 용량 부족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자치구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에만 의존해 오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의 지원까지 가능케 하는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침수 방지시설의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 안 제5조제3항의 침수 방지시설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한 의회 보고 시기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가 아닌 서울특별시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1
----------	-----------

제 안 년 월 일 : 2022년 12월 20일  
제 안 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 제5조제3항의 침수 방지시설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한 의회 보고 시기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가 아닌 서울특별시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 2. 수정 주요내용

- 가. 안 제5조제3항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로 함.(안 제5조제3항)

##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항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② (생략)</p> <p>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u>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u>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 ----- <u>서울특별시의회의</u> <u>해당연도 결산심사</u>에서 ----- -----.</p>

##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의 해당 연도 결산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보 또는 서

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